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보건의료인력지원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9조제5항 개정으로 재난상황,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('25.12.30. 개정, '26.7.1. 시행 예정).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비상상황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비상상황 규정(안 제7조의2 신설)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보건의료 재난 '심각 단계' 등으로 규정
-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(①)
 - ①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(②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(비상상황) 법 제9조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
2. 제1호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2(비상상황) 법 제9조제5</u> <u>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<u>비상상황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</u> <u>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 <u>1.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「재난</u> <u>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</u> <u>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</u> <u>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</u> <u>2. 제1호에 준하는 비상상황으</u> <u>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</u> <u>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</u> <u>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</u> <u>있는 경우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438